

1. 개정이유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 내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 시 당초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노선변경이 되는 산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노선 구역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석채취허가 시 복구비 예치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3년 이내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토석채취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기술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사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는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현행 면적에 따라 3년 이내부터 10년 이내로 하던 것을 면적에 상관없이 10년 이내로 하여 원활한 농림어업 경영을 지원하는 등 산지규제를 합리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위험지 판정기준기준 관련 시행령 연계조문 규정(안 제5조)

“산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면서 영 별표 3의3 제8호카목4) 설치조건으

로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라 위험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사태위험지 판정기준에 시행령 연계조문을 규정

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근거 법률 현행화(안 제10조제2항제1호마목)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24.2.20)·시행('25.2.21.)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근거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

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재해영향평가 검토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규정 등(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1) 및 카목, 별표1의3제5호나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 1) 5천제곱미터 이상 산지전용허가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협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재해위험을 검토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함
- 2)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는 사업*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비고1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나 길이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 영에 따른 재해위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②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서류 명확화(안 제10조제2항제1호파목, 안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안제24조제1항제13호 신설, 안 제29조제1항제9호 각각 신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1) 영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4항, 영 제20조제6항, 영 제36조제1항, 영 제39조제6항제7호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의 산지일시사용신고,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 지정신청 시에 산지경관모의 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경관훼손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2)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 및 각각의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동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고자 함

마.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15조의3제4항, 제42조제2항)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 시 당초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노선변경이 되는 산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산지일시사용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시 노선변경을 반영한 노선구역도를 제출하도록 함

바. “산촌채류형 쉼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 (안 제15조의3제6항제7호 신설)

영 개정을 통해 산촌채류형 쉼터가 도입됨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시설로 “산촌채류형 쉼터”를 신설
사. 산지전용 관련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4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법 제28조제2항제3호, 영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산지전용 관련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시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토석채취허가 신청시 산림조사서, 표고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아. 토석채취협의 시 소유권 관련 신청서류 제출 완화(안 제27조, 별지 서식 제19조의2)

토석채취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현행 협의 요청 시 제출하던 소유권 관련 서류를 작업착수 이전에 제출하도록 함

자.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반출기간 연장횟수 완화(안 제35조제6항)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불가피한 목적사업 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반출기간 연장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차. 토석채취허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 연장(안 제38조제3항)

토석채취허가 시 산지복구비의 분할 예치기간을 현행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분할 예치할 수 있도록 함

**카. 등록전환 측량오차에 따른 면적변동 시 산지전용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안 제43조제1항)**

사업계획의 변경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시 발생하는 측량오차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는 복구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시에 등록전환 성과도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산지전용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납현황 정기보고 의무화(안 제51조의2, 별지 제11호서식)

법정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수납 현황 파악을 통한 채권 해소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기 보고 사항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현황을 포함함

파.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ha당 입목축적) 적용 예외(안 별표 1의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시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하.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안 별표1의4)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현행 면적에 따라 3년 이내부터 10년 이내이던 것을 면적에 상관없이 10년 이내로 함

거. 양수발전시설을 복구대상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 적용의 예외로 규정
(안 별표6)

낙차를 이용하는 양수발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별표 1의3)에서 복구대상비탈면 수직높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별표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너.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신설(안 별지제42호서식)

개정안 제43조제1항을 반영하여 복구준공검사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지적측량성과도’를 추가하고,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수행의 결과를 관할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산지복구공사 감리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서류에 추가하여 감리 수행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 별표 4 제1호다목1)”을 “제8호카목4), 영 별표 4 제1호다목 1)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마목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 국토정보공사법」”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 하고, 같은 목 중 “산정 한다)를 ”산정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재해 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비고1 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나 길이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차목의 재해위험검토의견서를 제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차목 및 카목”을 각 각 “차목, 카목 및 파목”으로 한다.

파. 전용하려는 산지(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저감대책 1 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의3제4항제2호 중 “변경.”을 “변경. 다만, 영 별표 3의3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초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의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의 변경. 다만, 영 별표 3의3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초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의 노선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산촌채류형 쉼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항 제8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산지에 대한 경관훼손저감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취·채취했던 허가구역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와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에

다른 서류를 제외하되, 작업착수 이전에는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에 대한 경관훼손저감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취·채취했던 채석단지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와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6항 단서 중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불가피한 목적사업 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한다”를 “한다.(다만, 토석채취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동안 5회 이내로 예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제2항제2호 중 “노선구역도”를 “노선구역도(제15조의3제4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노선구역도에 반영해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복구준공검사신청서 제출시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51조의2 중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으로, “산지전용”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현황, 산지전용”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4호가목 단서 중 “사업인 경우에는”을 “사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관한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을 “아래의”로 하며, 같은 란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
- 2)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별표 1의4에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에 해당하 는 시설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	--------------------	--------

별표 6 제2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 하며, “산정합니다)”를 “산정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비고1 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나 길이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차목의 재해위험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나목 중 “차목 및 카목”을 “차목, 카목 및 과목”으로 하고, “차목 또는 카목”을 “ 차목, 카목 또는 과목”으로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 전용하려는 산지(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저감대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산정합니다)”를 “산정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비고1 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나 길이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차목의 재해위험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3호 나목 중 “차목 및 카목”을 “차목, 카목 및 파목”으로 하고, “차목 또는 카목”을 “ 차목, 카목 또는 파목”으로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파. 전용하려는 산지(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저감대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제1호차목 중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비고1 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나 길이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풍력발전시설 및 그 시설의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저감대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풍력발전시설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저감대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풍력발전시설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저감대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아목 중 “한정합니다)”를 “한정하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포함합니다)”를 “포함

하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로 하며, 같은 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산지에 대한 경관훼손저감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취·채취했던 허가구역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와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아목 중 “한정합니다)”를 “한정하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포함합니다)”를 “포함하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로 하며, 같은 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아래에 “유의사항”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산지에 대한 경관훼손저감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취·채취했던 허가구역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와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

합니다.

유의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 제2호나목, 제5호가목 및 제6호가목의 첨부서류는 제외하되, 작업착수 이전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에 대한 경관훼손저감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취·채취했던 채석단지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와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적측량성과도 1부.(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업무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6항 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 관련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카목, 제2호나목, 별표1의3제5호나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변경 관련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4항,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의 지정 등 신청서류 관련 적용례)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13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타목·과목, 제29조제1항제9호,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토석채취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석채취협의 시 협의서류 관련 적용례) 안 제27조 단서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석채취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연장 관련 적용례) 안 제3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농림어업인 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18

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4 제3의2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

☐ **납부고지 및 수납현황**[illegible]

□ 미수납 현황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 및 영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 ----- 제8호카목4), 영 별표 4 제1호다목1) ----- ----- -----.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라. (생 략)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 ----- -----

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바. ~ 자. (생 략)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결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

바. ~ 자. (현행과 같음)

[illegible]

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
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
과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
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
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
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다) <단서 신설>

1)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에 필요한 서류-----

2) ~ 6) (현행과 같음)

카. -----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에 필요한 서류 -----

-----산정한

다). 다만, 「자연재해대책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재

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

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비

고1 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나 길이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

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타. (생 략)
<신 설>

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제1호바목, 아목, 차목 및 카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차목 또는 카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새로 편입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는 차목의 재해위험검토의 견서를 제출한다.

타. (현행과 같음)

파. 전용하려는 산지(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경관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저감대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차목, 카목 및 파목-----

 - 차목, 카목 또는 파목-----

 -----.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인 경우에는 차목 및 카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3. (생략)

③ ~ ⑦ (생략)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 ③ (생략)

④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단서 신설>

3.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의 변

[illegible]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1. (현행과 같음)

2. -----

변경. 다만, 영 별
표 3의3 제4호 나목에 해당하
는 경우로서 당초 산지일시사
용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의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의 변

경

4. ~ 6. (생략)

⑤ (생략)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6. (생략)

<신설>

⑦·⑧ (생략)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 다만, 영 별표 3의3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초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의 노선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4. ~ 6. (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⑥ -----

-----.

1. ~ 6. (현행과 같음)

7. 산촌채류형 쉼터

⑦·⑧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 -----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서 신설>

1. ~ 12. (생략)
<신설>

② ~ ⑨ (생략)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다
만,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
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
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
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
우에는 이 항 제8호 및 제12호
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산지에 대한 경관 훼손저감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취·채취했던 허가구역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와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 2서식의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 6. (생략)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8. (생략)

<신설>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되, 작업착수 이전에는 제출해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에 대한 경관훼손저감 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

② ~ ⑤ (생략)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박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취·채취했던 채석단지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와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
호의 재난, 불가피한 목적사업
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38조(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①

• ② (생 략)

③관할청은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산지전용등의 착수전에 예치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생 략)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한다.(다만, 토석채취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동안 5회 이내로 예치할 수 있다)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생략)

2.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지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지방서 및 노선구역도

3. (생략)

③ ~ ⑦ (생략)

제43조(복구준공검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 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

1. (현행과 같음)

2. -----

----- 노선구역도(제15조의3 제4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노선구역도에 반영해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복구준공검사) ① -----

-----.

-----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시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 략)

제51조의2(보고) 영 제52조제8항
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
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
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
에게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
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
식으로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
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
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5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보고) -----

---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4
6호서식-----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고지 및 수납현황, 산지전용 --

-----.